

〈공개 질의서〉

**민생 · 통상 · 소수자인
권 관련 정책법안
질의서**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질의서 - 목차

<민생 분야>

1. 주거권 및 주거복지 관련
2. 약탈적 금융 하우스 푸어 대책 관련
3. 경제민주화 및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4. 중소기업, 중소기업 보호 관련
5. 유통재벌 규제
6. 재벌의 담합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7. 재벌에 대한 조세개혁

<반차별 소수자 인권 분야>

8. 차별금지법제 관련
9. 기초생활수급권 부양의무제 관련
10. 장애인 인권 관련
11.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관련

< 통상-FTA 관련 분야 >

11. ISD(투자자-국가 국제중재제도) 관련
12. 통상절차법 관련
13. 기타

질의 1 주거권 및 주거복지 관련

1. 공공임대주택 확대

- 현정부는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귀 당 후보의 평가, 특히 임대주택을 중심으로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만약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면, 귀 당 후보는 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어떠한 정책 또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 임대주택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임대주택 재고량 및 그 공급계획이 적절한지 귀 당 후보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 귀 당 후보가 제시하는 향후 임대주택 공급 목표량(연도별 포함), 공급 방법(재원 포함)은 무엇입니까?
- LH 부채가 누적돼 임대주택 공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귀 당 후보는 그 부채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주택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정비사업 분야

- 전세대란의 상시화로 인해 서민, 중산층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택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귀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주택 세입자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개선 방안에 대한 귀당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찬성(), 반대()

기타 의견 :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한 범위 이내(5%)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찬성(), 반대()

기타 의견 :

■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전환 산정률을 현행 14%에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 평균한 이자율의 1.5배의 범위 내의 비율로 낮추는 방안

찬성() 반대()

기타 의견 :

■ 서구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등록제 및 공정임대료의 도입

찬성() 반대()

기타 의견 :

■ 2009년 폐지된 재건축임대주택건설 의무화 부활

찬성() 반대()

기타 의견 :

○ 상가 세입자는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계약 종료 또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이주할 때에는 투입한 막대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가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개선 방안에 대한 귀당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폐지

찬성() 반대()

기타 의견 :

■ 재건축을 위한 건물 철거 등으로 인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 영업보상 의 무화

찬성() 반대()

기타 의견 :

○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토지등소유자의 부담능력을 무시한 사업 강행, 개발이익에의 편승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로 인해 주민 들간, 행정청과 주민간에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초래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을 정상화 하기 위한 귀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개선 방안에 대한 귀당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비용 국고 부담의 원칙 법제화

찬성() 반대()

기타 의견 :

7

■ 201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국가 분담 의무화

찬성() 반대()

기타 의견 :

■ 정비구역 지정 기준 강화

찬성() 반대()

기타 의견 :

■ 조합설립 동의 요건 강화

찬성() 반대()

기타 의견 :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상가 세입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영업보상금 현실화

찬성() 반대()

기타 의견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확충

찬성() 반대()

기타 의견 :

■임시상가 설치대상을 전면철거방식의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

찬성() 반대()

기타 의견 :

■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및 징수 유예 방침의 폐지

찬성() 반대()

기타 의견 :

3 주거복지 강화 분야

○ 정권 교체시마다 주거 복지에 관한 내용과 계획이 크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귀 후보 측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목표량 및 기타 주거 복지에 관한 목표 수치(예: 주택개량, 임대료 등 지원 규모) 및 재원 조달방안을 명시한 5년 단위 및 연도별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 있는가요?

○저소득층 등의 임대주택 공급 신청, 주택 임차보증금·임차료 등 보조금 신청, 주택개량 지원 또는 주택 개량비 지원 신청 등 주거 복지에 관한 급여에 관해 사회보장기본법 체계와 유사하게 관련 법령에 수급권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귀 후보 측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주거 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 복지 급여 신청 및 홍보, 권리 구제 지원 등을 담당할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주거 관련 단체에 위탁하거나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귀 후보측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의 2. 약탈적 금융 규제-하우스 푸어 대책 관련

이른바 '하우스푸어'(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하우스푸어'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질의 3 경제민주화 및 재벌의 개혁 관련

1.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재벌의 경우 개별 기업을 넘어 전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행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회사법적 규율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이용하여 소유와 지배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총수 일가의 이익 앞에 다수 주주의 이익이 희생당하고 있지만 이를 시정하는 법적 장치 또한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 이를 시정하여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법적 실체로 보아 규율하는 정책이 있는지요?

○ 총수의 잘못된 경영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중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요?

○ 기타 다음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 직접적, 간접적 상호출자(순환출자 포함) 해소

찬성 (), 반대 ()

기타 :

■ 소수주주의 다중 회계정보열람권

찬성 (), 반대 ()

기타 :

■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찬성 (), 반대 ()

기타 :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제규정을 공정거래법 3장 경제력 집중 억제로 이관

찬성 (), 반대 ()

기타 :

2. 재벌의 출자에 대한 규제

■ 출자총액규제

찬성 (), 반대 ()

기타 :

■ 순환출자규제

찬성 (), 반대 ()

기타 :

3. 재벌의 담합으로부터 소비자보호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찬성 (), 반대 ()

기타 :

질의 4 중소기업, 중소기업 보호 관련

○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유통재벌 골목시장 점령 등으로 기업간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후보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시며 관련한 법령을 어떻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는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이며 각 정책에 대해 찬, 반 여부 및 그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 중소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하고, 이에 진출한 재벌 계열사들을 철수하도록(영업양도, 기업분할, 계열분리 등을 명령)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찬성 (), 반대 ()

기타 :

■ 독과점해체 내지 재벌로의 일반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분할, 계열분리명령제의 도입

찬성 (), 반대 ()

기타 :

■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의 허용(공정거래법 개정)

찬성 (), 반대 ()

기타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거래내역보고 의무 부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아닌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책

찬성 (), 반대 ()

기타 :

■ 원자재가격 연동을 위한 수급사업자에게 단가증감청구권 부여

찬성 (), 반대 ()

기타 :

■ 공정위가 간이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찬성 (), 반대 ()

기타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 배상)를 원사업자가 해의를 가진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로 확장

찬성 (), 반대 ()

기타 :

■ 공정위 전속 고발권의 폐지

찬성 (), 반대 ()

기타 :

■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의 분쟁조정신청권과 소송대표성 인정

찬성 (), 반대 ()

기타 :

■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개선 방안(어음 사용 제한 및 현금결제 확대)

찬성 (), 반대 ()

기타 :

질의 5 유통재벌 규제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규모 유통업점이 골목시장을 장악하여 중소상인들의 삶이 기반이 된 시장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상생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및 지자체 조례로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의무휴업제, 진입에 있어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곳곳에 진입한 유통매장은 밤낮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용도별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 (), 반대 ()

기타 :

■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찬성 (), 반대 ()

기타 :

○ 개설시 인근점포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출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찬성 (), 반대 ()

기타 :

○ 영업시간 규제 - 찬/반

찬성 (), 반대 ()

기타 :

- 영업품목 규제 - 찬/반

질의 6 재벌에 대한 조세개혁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최저한세율 상향

찬성 (), 반대 ()

기타 :

2.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찬성 (), 반대 ()

기타 :

(1) 수혜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

찬성 (), 반대 ()

기타 :

(2) 일감몰아주기로 발생한 주식가치상승분을 증여가액으로 의제하여 과세

찬성 (), 반대 ()

기타 :

다. 법인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찬성 (), 반대 ()

기타 :

질의 7 차별금지법제 분야

1.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별시정을 위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들이 존재하나, 차별 일반을 포괄적,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귀 후보께서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제를 넘어서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아우르며 개별 차별관련법제 및 정책의 상위법이자 준거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실효성있게 구제하기 위한 법제도에 관해 어떠한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각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입장

2007년 12월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입법예고안의 차별금지조항 문구 가운데 ‘출신국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고용형태’ 등 7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 귀 후보께서는 법무부가 차별금지기본법안에서 삭제한 위의 각 차별금지사유들이 명시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 사유에 대한 찬반입장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8 빈곤 사각지대해소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최저생계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수급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지침 과 업무 관행이 중첩되어 수급권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 귀 후보께서는 이렇듯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떠한 법령의 제·개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하여 그밖에 어떠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질의 9 장애인 인권 분야

1. 발달 장애인 차별방지 및 인권보장

발달장애인은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학대·성폭력·인신매매·차별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고자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 귀 후보께서는 이렇게 차별과 억압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차별 방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떠한 법령의 제·개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2. 정신장애인 차별방지 및 인권보장

정신장애인은 일반인들의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이나 일반의 인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이 수백개에 이르고 있고, 강제입원 비율이 아직도 90%에 육박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귀 후보께서는 정신장애인의 부당한 강제입원을 막고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떠한 법령의 제·개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3. 장애인 권리옹호 제도를 통한 장애인 인권보장

지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그간 알려지지 않거나 인지되지 않았던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높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그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 귀 후보께서는 이러한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해 세부적으로 어떠한 법령의 제·개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4. 장애인 참정권 보장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부정·대리투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부정·대리투표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되던 사안입니다. 한편 장애계에서는 갈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선거 참여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모두 실시되어 더욱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투표소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선거방송을 들을 수 없으며, 선거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장애인이 수없이 많습니다.

- 귀 후보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떠한 법령의 제·개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질의 10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분야

1.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방지 및 인권보장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동성애자의 50% 이상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자퇴를 권고받거나 징계를 받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 귀 후보께서는 이렇게 차별과 억압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해 차별 방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떠한 법령의 제·개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2. 가족구성권 보장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동성 동반자 가족, 동거 커플 가족, 비혼 1인 가구, 비혼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 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종래의 가족 제도는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인 가족구성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 귀 후보께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고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떠한 법령의 제·개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3.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보장

현행 군형법 제92조의5는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접촉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니다. 그러나 이는 동성애에 대한 비범죄화의 국제적 요구에 반할 뿐 아니라,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미 군형법이 형법 등에 비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 성적 접촉으로 인한 성군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징계로써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귀 후보께서는 이러한 군형법 제92조의5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군형법 조항 및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관해 세부적으로 어떠한 법령의 제·개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4.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인권보장

다수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은 법원의 성별 정정 기준이 엄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 등의 성별을 정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편, 성전환과 관련한 의료적 조치의 높은 의료비와 고용시장에서의 배제가 맞물려 트랜스젠더/성전환자는 저소득 계층에 머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귀 후보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떠한 법령의 제·개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질의 11 ISD(투자자-국가 국제중재제도) 관련

1. ISD (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 국제중재제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높은 가운데 최근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에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BIT나 한미FTA에는 ISD 조항이 삽입되어 있어 한국이 ISD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요?

질의 12 통상절차법 관련

1.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이 제정되어 2012. 7. 1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상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보다 더 폭넓게 비공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요?

2. 통상절차법 제5조 제1항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로 하여금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10조 제2항은 통상협상에서 중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0조 제2항 단서는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사후보고를 이용하는 경우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권이 행사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요?

3. 통상절차법 제7조는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누구든지 정부에 대하여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더라도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 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고 농민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요?

4. 통상절차법 제11조는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평가대상 중에는 '국내 법령의 개폐'에 관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 법령과 충돌하고 조약이 우선 적용되어 국내 법제도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위 이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요?

질의 13 기타 통상 관련

1.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무직 장관급 인사로서 통상교섭사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통상교섭본부장의 가치관에 따라 협상 및 조약체결 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지난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향후 이를 개선하여 통상교섭본부장도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요?

2. 통상조약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이해에 직결되는 조약안의 경우에도 그 대책이나 사후 지원이 시기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미흡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비판이 있어, 현재 국회에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안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